

## 2023년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요양요원(요양보호사) 5차 채용 공고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요양요원(요양보호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11월 13일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 1. 채용개요

구분	채용직위	채용인원	고용형태	보수기준
제주시 종합재가센터	요양요원 (요양보호사)	5명	계약직	- 시간급 : 11,075원 (23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기준) - 각종 수당 내부지침에 따름

###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가. 응시자격

응시자격			
(공통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li> <li>■ 거주지 :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li> <li>■ 성별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면제된 자)</li> <li>■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li> <li>■ 임용예정일로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임용예정일 : '23.12.5.)</li> <li>■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응시자 유의사항 8-사, 결격사유 참고)</li> </ul>		
	구분	결격사유	
	종합재가센터	제주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	비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참고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조항에 위배 되는 자는 임용이 확정된 후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li> </ul>			

<b>(필수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li> <li>- 우대사항 : 장기요양 관련 사업기관 1년 이상 근무자(동점자 우선 합격)</li> </ul>
<p>※ 재가장기요양기관 경력인정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제1항제1호(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노인요양시설 사업</li> <li>2. 「노인복지법」제28조제1항제1호(방문요양), 2호(주야간보호), 3호(단기보호), 4호(방문목욕), 5호(그 밖의 서비스 중 방문간호) 및 노인요양시설 사업</li> </ol>	

**나. 가산(우대)사항**

구분	대상	우대요건	가점	증빙서류
취업지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li> <li>·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li> <li>·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li> <li>·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li> <li>·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li> </ul>	면접 각 항목 40% 이상 득점 시	법령에 따라 만점의 5% 또는 10%	공고일 이후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자		면접 총점 5%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①)</li> <li>「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②)</li> <li>「청년 미취업자(만34세 이하)」(③)</li> </ul>	동점자 발생 시 우대		증명서
<p>○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률의 적용기준을 따름</p> <p>○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됨(중복 적용 불가)</p> <p>○ 사회적취업 취약계층의 경우, 면접시험 동점자 발생 시 ①→③ 순으로 우대</p> <p>※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하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p> <p>※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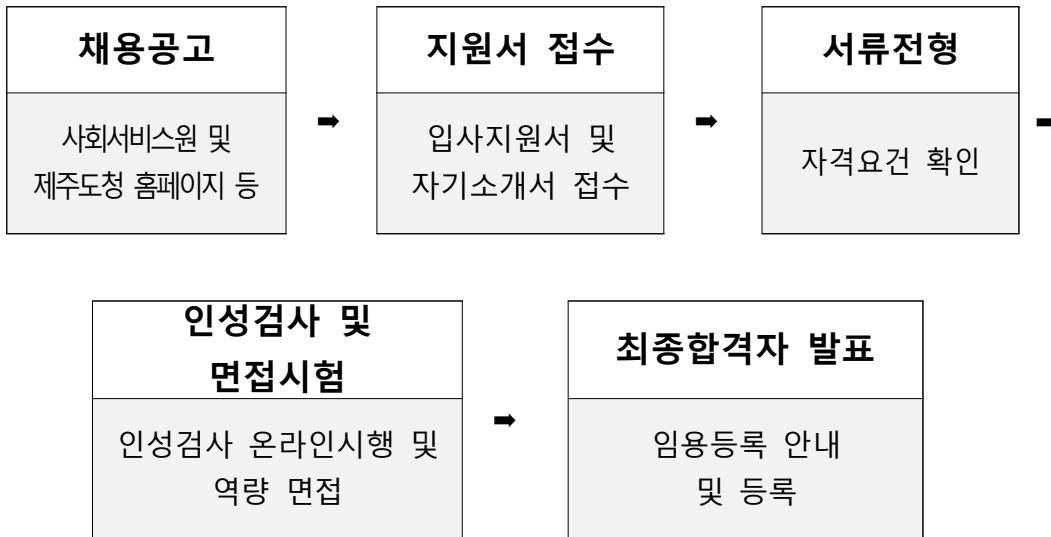
### 3. 직무내용

- 긴급돌봄지원사업의 돌봄 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돌봄공백 및 질병, 사고 등 기타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경우(본인이 원하는 경우)
- 기타 돌봄 정책(제주가치 통합돌봄 등)에 따른 돌봄서비스 제공

### 4. 시험단계 및 채용절차

가. 시험단계: 서류전형 → 필기시험(인성검사) → 면접시험

나. 채용절차



- ※ 전(前) 단계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단계의 응시자격 부여
-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진행 시 참고사항

### 5. 시험세부내용

가.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1) 채용공고

- 공고기간 : '23. 11. 13.(월) ~ 11. 22.(수)
- 공고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및 제주도청 홈페이지 등

2)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3. 11. 13.(월) ~ 11. 22.(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jejucare@jeju.pass.or.kr](mailto:jejucare@jeju.pass.or.kr))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조로 1254, 1층
- 응시직위 : 요양보호사(※결원 및 충원 필요 시 추가 채용예정)
  - 제출된 서류는 지원자격 적격여부 및 서류심사를 위해 사용
  - 채용형식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
- 제출서류 : 응시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나. 서류전형**

**1) 일자/장소 및 시험위원**

- 서류전형 : '23. 11. 23.(목)
- 장 소 :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시종합재가센터
- 시험위원 : 2명(내부 또는 외부위원)

**2) 심사방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응시 자격 적격 여부 결정
  - ※ 응시 자격 부적격, 제출서류 미비자를 제외한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3) 합격자 결정**

평가항목	합격자 결정 기준	비 고
· 응시자격 적격/부적격 여부	· 채용분야 응시자격이 " 적격 " 인 자	

**4) 서류전형 합격자 및 인성·면접시험 대상자 통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3. 11. 24.(금)
- 통지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다. 인성검사**

**1) 일자 및 장소**

- 일 자 : '23. 11. 29.(수) ※시간추후 통보
- 장 소 :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시종합재가센터

**2) 대상 및 출제방법**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출제방법 : 온라인 인성검사 문제지(20분간 객관식 150문항)

- 인성검사 종합결과, 응답신뢰도, 조직적합도 항목
- 응시자 휴대전화(스마트폰) 활용 온라인 검사진행
- ※ 스마트폰이 아닐 시 인성검사 응시불가(2G폰 등 사용불가)

○ 합격자결정 : 응시자 전원 면접시험 기회 부여하며,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 라. 면접시험

### 1) 일자/장소 및 시험위원

- 일 자 : '23. 11. 29.(수) ※시간추후 통보
- 장 소 :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시종합재가센터
- 면접위원 : 3명(내·외부위원)

### 2) 심사방법

면접평가요소					합 계
①공적 책무성 등	②인성 및 직업관	③이해력· 지식수준	④의사발표 정확성 및 논리성	⑤창의성 및 전문성	
20	20	20	20	20	100

※ 면접전형 결과 시험위원 평균 점수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반영하고, 나머지는 절사

## 6. 채용전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23. 11. 13.(월) ~'23. 11. 22.(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고 등
지원서접수	'23. 11. 13.(월) ~'23. 11. 22.(수) 18:00까지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
서류전형	'23. 11. 23.(목)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개별안내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3. 11. 24.(금)	
인성검사 및 면접전형	'23. 11. 29.(수)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23. 11. 30.(목)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임

## 7. 제출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비고
응시자 공통	입사지원서	[서식1] 필수제출
	자기소개서	[서식2] 필수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동의서	[서식3] 필수제출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필수제출
	주민등록 초본	필수제출 공고일 이후 발행, 주소변동 기재, 병역사항 포함 (※등본 제출 시 인정 안됨.)
	재직/경력증명서	해당자(우대사항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해당자(우대사항 확인)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가산점 확인)
최종 합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증명서</li> <li>■ 가족관계증명서</li> <li>■ 주민등록등본(13자리 모두 표시)</li> <li>■ 일반채용신체검사서</li> <li>■ 반명함 사진 1부(3*4cm)</li> <li>■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li> <li>■ 기타 서류는 별도 안내</li> </ul>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검사 결과로 채용신체검 사를 대신할 수 있음.

※ 경력증명서 외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함.

## 8.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3. 11. 13.(월) ~ 2023. 11. 22.(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jejucare@jeju.pass.or.kr](mailto:jejucare@jeju.pass.or.kr))  
(※ 방문 접수는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조로 1254, 1층
- 문의전화 : 064-746-6555(제주시종합재가센터 담당자)

## 9. 최종합격자 결정 및 통지

### 가.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 평정요소	합격자 결정 기준	선발예정 인원
① 공적 책무성 등 ② 인성 및 직업관 ③ 이해력·지식수준 ④ 의사발표 정확성·논리성 ⑤ 창의성 및 전문성	· 평정요소별 모든 시험위원의 점수를 산술 평균 후 <b>60점 이상</b> 득점자 중, <b>고득점자 순</b> 【동점자 처리】 - 1순위 :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 장애인 - 3순위 : 사회적취업취약계층 - 4순위 : 면접 평정요소 고득점 순 (①→②→③→④→⑤) ※ 상기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발생 시 장기요양 관련 사업 1년 이상 근무자 우선 합격 적용함	<b>20명</b>

### 나. 최종 합격자 통지

- 합격자 발표 : '23. 11. 30.(목) 예정
- 통지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 임용예정일 : '23. 12. 5.(화) 이후
- ※ 합격자발표 이후 업무관련 교육, 회의등 개최될 시 임용 전이라도 참석 필수

## 10. 응시자 권리보호 제도 안내

### 가.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예비합격자는 비공개)

- 운영목적: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및 임용 후 중도 퇴사 등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결원 해소
- 운영규모: 최종 합격자 인원의 2배수
- 유효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나. 이의신청 절차 안내

- 접수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 접수방법 : " 채용결과 이의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서명한 후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시종합재가센터로 제출

○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답변 처리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

#### 다. 채용서류 반환

○ 운영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청구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 접수방법 :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서명한 후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시종합재가센터로 제출

○ 반환방법 : 입사지원서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

### 11. 기타사항

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사회서비스원·제주도청 홈페이지등에 공고하므로 수시 확인 바랍니다.

나.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는 채용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견될 경우 전형별 단계에서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라.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인 것으로 확인되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는 즉시 합격이 취소되며,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사회서비스원의 모든 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바.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통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채용 결과 책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채용 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 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자. 최종 합격자의 근무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임용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차. 임용 예정일 이후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카. 입사지원서 접수마감 후에는 기재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 타. 채용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합격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파. 그 밖에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제주시종합재가센터 (064-746-65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사회서비스원과 제주시종합재가센터는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부정 합격이 확인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1】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인사관리 규정 제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서 규정한 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